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통지
-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제5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윤O경	76.05.1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통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른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중단)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3회~6회차) 미제출 및 연락두절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국민 취 업 지 원 제 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이하 생략)

- 4. 공고기간: 2024. 6. 5. ~ 2024. 6. 26.(15일간)
-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함송이(tel. 033-250-1955)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